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여명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매해 4월 탈북학생 현황과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탈북학생 2,949명 중 학업중단 학생 76명의 주요 이유가 학교부적응과 장기결석, 가정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절반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탈북학생과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의 용어를 정의하고,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각종 학업 지원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